

제172회 영등포구의회
2012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
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신홍식의원 대표발의】



2012. 12. 10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
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8호로 2012년 11월 9일 신홍식의원 외 9명으로
부터 발의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이 폐지조례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
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한
기능을 가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
관한 조례」가 2012년 7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통폐합하여
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
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4. 검토의견

본 폐지조례안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던 중 지난 7월 19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통폐합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를 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